

#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br>번호 | 1283 |
|----------|------|

2020년 2월 25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2월 5일, 김제리 의원 외 10명
- 나. 회부일자 : 2020년 2월 12일
- 다. 상정일자 : 제29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0년 2월 25일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김제리 의원]

### 가. 제안이유

- 도시 열섬화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의 경관 향상 및 녹지 확충을 위하여 건축물·가로구조물 옥상녹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1) 옥상녹화사업을 위한 시의 책무 및 지원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2) 옥상녹화사업의 지원대상 및 시행 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6조~제9조)
- 3) 옥상녹화사업에 대한 시와 관리책임자의 협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 4) 옥상녹화사업의 유지관리 및 시설 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 제12조)
- 5) 조례 이외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13조~제14조)
- 6) 보조금 지원비율, 식재기준을 별표로 정함. [별표 1], [별표 2]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첨부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 이재효]

#### 가. 개요

-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 열섬화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의 경관 향상 및 녹지 확충을 위하여 건축물·가로구조물 옥상 녹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1) 옥상녹화사업 추진 현황

- 옥상녹화(Roof planting)는 건축물의 옥상부분에 흙을 올리고 식물을 식재하여 생태적, 경관적 효용을 얻기 위해 시행하는 녹화사업으로 휴게공간 조성 뿐 아니라 옥상에서 시행하는 일련의 조경사업들 모두 옥상녹화에 포함시키고 있음.

- 서울시는 2002년부터 옥상녹화 및 텃밭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총 758개소 315,532㎡의 옥상녹화 및 텃밭조성을 완료하였음. (참고 1)
  - 사업건물수: 총 758개소(민간 392개소, 공공 366개소)
  - 옥상녹화 면적: 315,532㎡
  - 예산: 총 713억 4천1백만원

##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서울시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녹화조례」)를 제정하여 도시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음.
- 「도시녹화조례」에는 도시녹화계획(제2장), 녹지활용계약(제3장), 녹화계약(제4장), 도시녹화사업 보조금 지원 등(제5장)의 내용을 적시하여 도시녹화 사업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 옥상녹화 관련해서는 「도시녹화조례」 제33조제3호1)에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서울시의회에서는 2011년 12월 9일 본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이 발의(남재경의원)되었으나, 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 폐기된 사례가 있음.

### 1) 제33조(도시녹화사업 보조금 지원)

③ 시장은 민간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가 옥상녹화·창문화단녹화·벽면녹화·담장개방 녹화 및 실내조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녹지관리청을 통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 제21조와 「건축법」 제42조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도시녹화를 활성화해야 하는 서울시에서 도심지역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녹화를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며, 조례로 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 도시녹화의 한 방법인 옥상녹화 사업에 관한 조례를 만들 경우, 벽면 녹화, 바람길 녹지 조성, 실내조경 등 사업에 따라 개별사업에 대한 조례를 무분별하게 양산할 수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정한 「도시녹화조례」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시행규칙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 참고로 「도시녹화조례」는 다수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았음.

### 3) 조례안 검토

- 안 제3조에는 옥상녹화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주택법」과 「건축법」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항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 건물과 도로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하고자 함.
  - 법적 의무조항이 있는 신축 건축물에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를 선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에는 옥상녹화를 위한 지원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별표 1]에는(안 제5조제4항) 사업비 지원 비율을 정하고 있음. [별표 1]에는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을 구분하여 보조금 지원 비율을 명시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원 비율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시 소유 건축물은 100% 지원하고 있으나, 자치구는 30~70%, 공공기관 및 민간건축물은 50% 지원하는 등 차등지원에 따라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과거 민간건축물에 옥상녹화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사유재산의 가치를 높여주는데 공공의 예산을 사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 소규모 건물 옥상녹화의 경우 공공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개인의 정원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건물주에게 공사비의 50%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던 것임.
- 금번 조례안에는 민간건축물 중 일반지역 내 건축물은 70%이내,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건축물은 90%이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음.

- 민간건축물 지원 한도: 50%에서 70%로 상향
- 도시재생사업지역 내의 건축물: 90%까지 상향

- 서울시에는 현재 39개지역이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확정되었으며, 8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여 총 47개소가 지정되었음.(참고 2)
- 도시재생사업은 뉴타운 사업을 대체해 낙후된 도심의 기능을 재활 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노후건축물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옥상녹화를 위한 구조안전 진단을 시행할 경우 부적격 건축물이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또한 도시재생사업지역과 인접한 건축물도 옥상녹화의 효과는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역 내와 구역 외로 보조금 지원에 차등을 둔다면 옥상녹화 사업 저변 확대에 또 다른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별표 1]의 민간건축물 옥상녹화 보조금 지급 비율과 범위에 대해 민간건축물은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적절한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안 제6조는 지원 대상 및 사업진행 절차를 명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과 서식은 규칙으로 정하여 세부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였음. 또한 안 제7조는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옥상녹화 선정심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옥상녹화 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안 제11조에는 옥상녹화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공사에 대해서는 건물주와 사업시행자 간의 역할을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공사 후 5년간은 역할을 분담하며, 이후 유지관리는 건물 관리자의 책임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음.
  - 그동안 시행했던 옥상녹화 대상지는 기간제 공무원이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보고에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식물의 증감현황이나, 시설물 훼손현황 등 구체적 변화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시설 훼손 및 개선 필요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채 현황에 대해서만 보고하고 있음.
  - 따라서 매년 옥상녹화 사업 건물의 식물생육상태 변화를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연도별 비교 등 보다 구체적인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병충해 발생, 시설물 훼손 등 옥상녹화 사업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하여 적극적인 관리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 민간건물에 옥상녹화를 할 경우 건물주는 보안상, 안전상의 이유로 개방에 부담을 갖고 있으며,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민간건물은 구조 안전진단에 불필요한 경비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활용과 성공적인 사업 집행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공건축물은 서울시 소유와 자치구 및 공공기관 건축물의 지원비율을 달리하며,
- 민간건축물은 모든 지역에 보조금 지원비율을 동일하게 하여 옥상녹화를 활성화 하도록 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br>번호 | 관련<br>1283 |
|----------|------------|

제안년월일 : 2020년 2월 25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 1. 수정이유

- 옥상녹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공건축물은 서울시 소유 건물과 자치구 및 공공기관 건물에 대해 지원 비율을 달리하고, 민간건축물은 도시재생사업지역과 차등을 두지 말고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 2. 주요 골자

- 안 제3조, 제6조, 제8조, 제11조에 명시된 “서울시”를 “시”로 변경함.
- 안 제7조의 제목을 변경함.
- [별표 1] 공공건축물 중 자치구와 공공기관 건축물의 보조금 지원비율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이내로 감하고, 민간건축물은 모든 지역에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함.

##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서울시”를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안 제5조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제1호 중 “서울시”를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청장에게 한”을 “청장에게”로 한다.

안 제7조의 제목 “(지원대상지 선정)”을 “(심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제1호 중 “서울시”를 각각 “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서울시”를 “시”로 한다.

안 제11조제2항 중 “서울시”를 “시”로 하고, 제3항 “관리책임가”를 “관리책임자가”로 한다.

안 제14조 중 “관하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안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별표 1]

옥상녹화 보조금 지원 비율(제5조제4항 관련)

| 구 분        |          | 보조금 지원 비율          |
|------------|----------|--------------------|
| 공 공<br>건축물 | 서울시 건축물  | 총사업비의 100분의 100 이내 |
|            | 자치구 건축물  |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이내  |
|            | 공공기관 건축물 |                    |
| 민간 건축물     |          |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이내  |
| 기 타        | 가로구조물    | 총사업비의 100분의 100 이내 |



| 제 정 안  | 수 정 안   |
|--|---|
| <p>제7조(지원대상지 선정) ① ~ ③ (생략)</p>  | <p>제7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 ③<br/>(제정안과 같음)</p>   |
| <p>제8조(사업시행) ① 옥상녹화사업 시행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서울시</u>, 자치구 및 공공기관 건축물의 경우는 <u>서울시</u> 또는 소재지 해당 자치구</p> <p>2. (생략)</p> <p>3. 가로구조물의 경우는 <u>서울시</u> 또는 소재지 해당 자치구</p> <p>② (생략)</p>  | <p>제8조(사업시행) ① -----<br/>-----.</p> <p>1. <u>시</u>-----<br/>----- <u>시</u> -----<br/>-----</p> <p>2. (제정안과 같음)</p> <p>3. ----- <u>시</u> -----<br/>-----</p> <p>② (제정안과 같음)</p>            |
| <p>제11조(옥상녹화의 유지·관리)</p> <p>① (생략)</p> <p>② 옥상녹화 조성지역의 물주기, 잡초제거작업 등 일상적인 관리는 관리책임자의 책임으로 하되, 시설준공 후 5년 동안은 병해충 방제, 전정, 기술자문 등은 관리책임자와 <u>서울시·자치구</u> 간 역할 분담으로 진행하며 관련 내용은 협약서에 명기한다.</p> <p>③ 시설준공 후 5년이 경과된 옥상녹화 조성지역의 유지관리는 <u>관리책임자</u>가 하여야한다.</p> | <p>제11조(옥상녹화의 유지·관리)</p> <p>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br/>-----<br/>-----<br/>-----<br/>----- <u>시</u>·<br/>-----<br/>-----<br/>-----.</p> <p>③ -----<br/>----- <u>관리책임자</u>가 -----.</p> |
| <p>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p>제14조(시행규칙) -----<br/>----- <u>필요한</u> -----<br/>-----.</p>   |

## 제 정 안

[별표 1] 옥상녹화 보조금 지원 비율  
(제5조제4항 관련)

| 구 분                   |                               | 보 조 금 지 원 비 율         |
|-----------------------|-------------------------------|-----------------------|
| 공<br>공<br>건<br>축<br>물 | 서울시<br>건축물                    | 총사업비의 100분의<br>100 이내 |
|                       | <u>자치구</u><br>건축물             |                       |
|                       | <u>공공기관</u><br>건축물            |                       |
| 민<br>간<br>건<br>축<br>물 | <u>일반지역 내</u><br>건축물          | 총사업비의 100분의 70<br>이내  |
|                       | <u>도시재생사<br/>업지역 내</u><br>건축물 | 총사업비의 100분의 90<br>이내  |
| 기<br>타                | 가로구조물                         | 총사업비의 100분의<br>100 이내 |

※ 도시재생사업지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고시된 지역

## 수 정 안

[별표 1] 옥상녹화 보조금 지원 비율  
(제5조제4항 관련)

| 구 분                   |             | 보 조 금 지 원 비 율         |
|-----------------------|-------------|-----------------------|
| 공<br>공<br>건<br>축<br>물 | 서울시<br>건축물  | 총사업비의 100분의<br>100 이내 |
|                       | 자치구<br>건축물  | 총사업비의 100분의<br>70 이내  |
|                       | 공공기관<br>건축물 |                       |
| 민간 건축물                |             | 총사업비의 100분의<br>70 이내  |
| 기<br>타                | 가로구조물       | 총사업비의 100분의<br>100 이내 |

##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열섬화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의 경관 향상 및 녹지 확충을 위하여 건축물·가로구조물 옥상녹화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가로구조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3. “옥상녹화”란 건축물·가로구조물의 옥상에 수목, 초화류, 잔디 등을 식재하여 생태적, 경관적 효용을 얻기 위해 환경 친화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옥상녹화 가능면적”이란 건축물·가로구조물의 옥상면적 중에 사람의 출입 및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제외한 녹화 가능한 면적을 말한다.
5. “관리책임자”란 건축물·가로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가로구조물 옥상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주택법」 과 「건축법」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옥상녹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책을 개발·보급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옥상녹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축물·가로구조물의 옥상녹화
2. 옥상녹화 설계기준 및 권장설계도서 작성·보급
3. 옥상녹화와 관련된 행사 및 강연회, 워크숍 등 교육
4.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옥상녹화 관련 홍보
5.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지원
6. 그 밖에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옥상녹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옥상녹화사업의 보조금 지원 비율은 [별표 1]과 같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및 절차)** ① 옥상녹화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자치구 소유 건축물
2. 공공기관 건축물
3. 옥상녹화 가능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민간 건축물
4. 가로구조물

② 시장은 옥상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시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옥상녹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재지 해당 자치

구청장에게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옥상녹화사업 지원 대상지 선정을 위한 옥상녹화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매년 구성하고 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옥상녹화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옥상녹화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제8조(사업시행)** ① 옥상녹화사업 시행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자치구 및 공공기관 건축물의 경우는 시 또는 소재지 해당 자치구
2. 민간 건축물의 경우는 소재지 해당 자치구
3. 가로구조물의 경우는 시 또는 소재지 해당 자치구

② 자부담금이 있는 민간 건축물의 경우는 자부담금을 사업 시행기관인 자치구에 우선 납부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정산한다.

**제9조(옥상녹화 식재 기준 등)** 건축물·가로구조물의 옥상녹화를 하는 때에는 옥상면적, 각종 설비나 유지·관리 조건,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넓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옥상녹화 식재기준 등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10조(옥상녹화 협약서 체결)** ① 이 조례에 따라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하여 시장과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결한다.

1. 식재 수목 등의 종류·수량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옥상녹화의 유지·관리 내용과 기간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협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옥상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협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8. 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옥상녹화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 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옥상녹화의 유지·관리)**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한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하여 준공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책임자에게 인수·인계하여 관리책임자가 관리하되, 법정하자기간(준공검사일로부터 2년)은 사업 시행기관과 관리책임자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② 옥상녹화 조성지역의 물주기, 잡초제거작업 등 일상적인 관리는 관리책임자의 책임으로 하되, 시설준공 후 5년 동안은 병해충 방제, 전정, 기술자문 등은 관리책임자와 시·자치구 간 역할 분담으로 진행하며 관련 내용은 협약서에 명기한다.

③ 시설준공 후 5년이 경과된 옥상녹화 조성지역의 유지관리는 관리책임자가 하여야한다.

제12조(시설 점검) ① 시장은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옥상녹화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점검은 준공 이후 5년에 한해 진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기록·관리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옥상녹화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조경기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옥상녹화 보조금 지원 비율(제5조제4항 관련)

| 구 분        |          | 보조금 지원 비율          |
|------------|----------|--------------------|
| 공 공<br>건축물 | 서울시 건축물  | 총사업비의 100분의 100 이내 |
|            | 자치구 건축물  |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이내  |
|            | 공공기관 건축물 |                    |
| 민간 건축물     |          |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이내  |
| 기 타        | 가로구조물    | 총사업비의 100분의 100 이내 |

## [별표 2]

### 옥상녹화 식재기준(제9조 관련)

1. 옥상녹화에 따른 하중이 건축물 구조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식재하는 수종의 높이에 따라 적정 토심을 확보한다.
3. 녹지 확충을 위해 녹지율 8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고열, 바람, 건조 및 일시적 과습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식물종을 선정하고, 토양의 건조 방지 및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을 위하여 건축물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관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로구조물 옥상녹화의 경우 필요에 따라 관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바람의 영향이 강한 장소에서는 방풍을 위한 수벽, 지지대 등을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6. 성장 예상 높이를 고려하여 수고(나무높이)의 2/3를 난간에서 이격시켜 식재하여 교목의 쓰러짐이나 추락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7. 건축물이나 공중에 위해(危害)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조치 및 방근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높이 1.2m 이상의 난간 등의 안전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되, 그 밖에 조경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조경기준」을 따른다.